

	<b>교원성과연동형연봉제규정</b>	규정번호	3-2-10
		제정일자	2026.03.01.
		개정일자	-
		개정차수	-
		소관부서	교무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교원의 성과연동형연봉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된 일반전임교원(성과연동형연봉제 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과연동형연봉제”라 함은 교원의 성과평가 결과를 연봉에 반영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2. “기본연봉”은 연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3. “성과연봉”이라 함은 성과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연봉을 의미한다.
4. “성과평가”라 함은 「교수업적평가규정」에 따른 업적평가를 말한다.

제4조(연봉) ① 교원의 연봉은 기본연봉, 기본연봉 인상분, 성과연봉 및 수당으로 구성한다.

- ② 성과연봉은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

제5조(기본연봉) ① 신규임용자의 기본연봉 책정은 연봉계약제교원보수책정지침으로 정한다.

- ② 임용 1년차 교원에게는 기본연봉만 지급한다.
- ③ 기본연봉은 매년 일정 비율로 인상할 수 있으며, 인상은 대학의 재정여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성과연동형연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이 경우 인상된 기본연봉은 차년도 기본연봉 산정의 기준이 된다.
- ④ 승진 시에는 승진급을 기본연봉에 반영할 수 있으며, 승진급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 ⑤ 기본연봉에는 정액급식비, 학생지도비, 특별연구비,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연구보조비 및 정근가산을 포함한다.

제6조(성과연봉) ① 성과연봉은 당해연도 기본연봉 인상분을 제외한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성과평가 등급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 ② 성과평가 등급은 S, A, B, C로 구분한다.

제7조(수당) ① 기본연봉, 기본연봉 인상분 및 성과연봉 외에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초과강의료
2. 보직수당
3. 기타 대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당

- ② 수당 지급 기준은 「교직원보수규정」을 따른다.

제8조(연차별 운영) ① 임용 1년차 교원에게는 성과연봉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2년차부터는 기본연봉, 기본연봉 인상분 및 성과연봉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제9조(성과평가) ① 성과연동형연봉제 교원의 성과평가 기간, 평가 영역, 평가 방법 및 절차 등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은 「교수업적평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 ② 성과평가 결과는 성과연봉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한다.
- ③ 교원은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성과연동형연봉심의위원회) ① 성과연동형연봉에 관한 기타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성과연동형연봉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성과연동형연봉심의위원회는 교무위원회로 한다.

제11조(성과급 지급 기준) ① 성과연봉 지급을 위한 기준성과급 총액은 성과연봉 적용 대상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등급별 인원 비율, 성과연봉 지급 비율 및 가중치는 대학의 재정 상황, 경영성과, 핵심인재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성과연동형연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매년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연봉적용 및 지급) ① 기본연봉의 적용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중도 임용자의 연봉 적용기간은 성과평가 대상여부 및 평가기간 등을 고려하여 임용일 이후의 연도의 차차년 2월 말일까지로 할 수 있다.

③ 중도 임용자 중 전년도 평가기간이 6개월 미만인 교원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성과연동형연봉심의위원회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④ 기본연봉은 1년을 단위로 정하되 연봉액의 월지급액 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지급일은 본교 급여 지급일로 한다.

⑤ 연봉은 본 규정에 따라 매 연도 산정·확정하여 적용한다.

⑥ 대학은 매 연도 연봉 산정 결과를 교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교원이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연봉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⑦ 임용사항의 변동 등으로 연봉의 재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봉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변경계약 체결 없이 서면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⑧ 전년도 성과에 의해 결정된 성과연봉을 12개월로 나눈 월별 성과급은 결정된 익월부터 급여일에 가산하여 지급하되, 3월부터 성과급 결정일 이전까지의 금액은 소급 적용하여 성과급 결정월에 일괄 지급한다.

제13조(성과연동형연봉 지급 제한) ① 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교원은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징계처분 기간 중에 있는 교원에 대하여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그 밖의 신분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연봉월액을 감액하거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 및 교직원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임용된 교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